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10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24.
3. 회 부 일 : 2026. 3.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 등 불공정거래는 거래관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없이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이 “예산의 범위”로 제한되고 있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④ (생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u>예산의 범위</u>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u>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의</u> ---. ⑥ ~ ⑧ (현행과 같음)

□ 신고포상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현행법 제22조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부당반품(제10조), 하도급대금의 감액(제11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제12조의3)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행법 시행령¹⁾은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함.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의 세부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고시 별표에서는 부과하는 과징금의 규모 등에 비례하여 신고포상금의 범위를 규정함(참고자료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사례에 대해서는 최저 지급기본액을 500만원으로 하고, 지급기본액은 과징금의 10%로

1)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법 위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법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2. 삭제 <2017. 9. 29.>
3.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4. 삭제 <2017. 9. 29.>

④ 제3항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설정하고 있음.

- 신고포상금은 첫째,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을 극대화하고, 둘째, 위반행위의 폭로 가능성을 수반하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의 효과를 가지며, 셋째,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는 약 116억 3,500만원에 달하고, 2025년 한해의 경우 약 13억 4,700만원을 집행함.
- 신고포상금의 대부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따른 것으로 2025년 지급액 13억 4,700만원 중 약 96.5%를 차지함.
-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2021년부터 2025년 간 1건(400만원)에 불과한 수준임.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수, 천 원)

연도	근거법률	건수	총 지급액	총예산
2021	공정거래법	15	2,342,550	2,130,000
	하도급법	-	-	
	가맹사업법	15	9,950	
	대리점법	-	-	
	대규모유통업법	-	-	
	방문판매법	1	1,000	
	합계	31	2,353,500	
2022	공정거래법	17	3,067,232	3,130,000
	하도급법	-	-	
	가맹사업법	24	38,295	
	대리점법	1	500	
	대규모유통업법	1	51,955	
	방문판매법	-	-	
	합계	43	3,157,982	
2023	공정거래법	40	3,312,145	3,350,000
	하도급법	-	-	
	가맹사업법	22	7,600	
	대리점법	3	9,760	
	대규모유통업법	1	31,760	
	방문판매법	1	250	
	합계	67	3,361,515	
2024	공정거래법	21	1,372,357	3,000,000
	하도급법	-	-	
	가맹사업법	13	24,300	
	대리점법	2	700	
	대규모유통업법	1	17,238	
	방문판매법	-	-	
	합계	37	1,414,595	
2025	공정거래법	16	1,300,545	3,150,000
	하도급법	1	4,000	
	가맹사업법	14	39,974	
	대리점법	1	750	
	대규모유통업법	-	-	
	방문판매법	2	1,800	
	합계	34	1,347,069	

※ 총예산은 해당 연도 신고포상금 지급 명목으로 편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예산을 말함.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개정안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30%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신고포상금을 과징금에 비례해 지급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법 위반의 사전예방 효과를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회가 2024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²⁾하여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금액의 3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개정안의 입법방향을 지지하는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임.³⁾

2)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다만,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의 지급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상대상 가액	산정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타법과의 형평성 측면임.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만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그 지급 기준을 ‘예산의 범위’로 하고 있는바 하도급거래만 다르게 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 다음으로, 개정의 실익 측면임.

개정안은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과징금에 비례하여 규정함으로써 적발된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이미 현행 법령과 고시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부과하는 과징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봄.⁴⁾

4)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처럼 하위법령과 고시로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09

**【참고자료】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12.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하도급법 시행령 제10조2 제4항 관련)	
가. 신고된 하도급법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나. 신고된 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 또는 나.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또는 나.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또는 나.에 의해 산출	

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또는 나.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 또는 나.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한다.

라.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마. 위 가. 부터 다.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범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범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되, 하도급법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범위반 행위사실 1개당 2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다.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범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